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<http://www.kma.org>] / 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박상아 [6575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587호

시행일자 2026. 9. 3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(CT)의 급여기준」 관련 의견요청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기준개선단-20 (2026.9.30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(CT)의 급여기준」(고시 제2023-242호, 2024.1.1.시행) 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해온 바, 우리협회 보험정책급여팀(kma6350@naver.com 메일송신 요망)으로 2026. 10. 12.(월)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요청 내용 : 「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(CT)의 급여기준」 관련

나. 요청 내용 (**※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파일 참조**)

1) 30일 이내 동일 상병에서 동일 부위 CT 재촬영이 필요한 임상적 사유

2) 환자가 소지한 외부병원 CT 촬영 영상의 화질 불량이나 검사부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(임상지침 등)

3) CT 검사의 반복촬영 관리 측면에서, 기 촬영 복사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재촬영 시 급여 인정 필요성

4) 의료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등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CT 촬영 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급여기준 상 일반원칙을 설정 하는 경우,

- 「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」(질병관리청, 2022) 적용의 적절성

- 기타 적용 가능한 임상진료지침 등

5) 기타 의견

#붙임 : 의견요청서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과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